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제목	[질의회신08-009] 변액연금보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8-02-26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13-27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기업 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I. 질의내용

회사는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바 납입액 중 보험료부분과 사업비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 매기말 보유좌수와 평가액이 기재된 평가금액보고서를 제공받고 있음)

현재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험료부분과 사업비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을 어떠한 계정에 계상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나 예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여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영업외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수익증권으로 보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보충)

- 1. 변액연금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은 회사가 직접 수령하며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음.
- 2. 계약자. 수익자가 회사이므로 중도해약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음.
- 3. 연금은 임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되기 시작함.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u>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u>으로 인식합니다. 인식된 투자자산은 매 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되 회계기간의 납입액 중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